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명시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46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명시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0.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명시

가. 개정안 요지

-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함)을 명시함(안 제2조제16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마. (생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조1)에서는 “공공기관”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제4조 제3항2))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추진(제14조제1항³⁾)
-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마련(제18조제2항⁴⁾)
- 지능정보화 추진 시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제19조제1항⁵⁾)

○ 그런데 현행법에 출자·출연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⁶⁾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에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2조제16호마목에⁷⁾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로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문 의 처
02)6788-5228